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453
-01

<http://www.mifaff.go.kr>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51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62
◆ 찾아보기	7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8. 8. 3 시행(2007. 8. 3 제정공포 법률 제8589호)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12. 7. 26 시행(2011. 7. 25 전부개정공포 법률 제10938호)

2. 동 법 시행령

○ 2008. 8. 4 시행(2008. 7. 29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20945호)

○ 2012. 7. 26 시행(2012. 7. 24 전부개정공포(대통령령 제23983호)

3. 동 법 시행규칙

○ 2008. 8. 4 시행(2008. 8. 1 제정공포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호)

○ 2012. 7. 26 시행(2012. 7. 24 전부개정공포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8호)

법 률(제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7	
제6조(조사·등재 등) 8		제2조(농수산생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 8
제7조(분석·평가 등) 10		제3조(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등) 10
제8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등의 취득 등)	제3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등의 취득	제4조(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11
..... 11	허가 절차) 11	
제9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 12	제4조(공동취득의 허가 절차) 12	
제10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13	제5조(외국인등의 의무) 13	
제11조(허가등의 취소·중지) 15		제5조(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분) 15
제12조(조건부 허가 등) 16	제6조(허가의 조건) 16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18		
제3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14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운영 등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19	
..... 19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19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제15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운영 등 21	제9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기준 21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26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21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23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25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21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28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26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26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29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26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28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29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29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31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31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31
제4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제20조(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등) 32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33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33	
제22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34	제18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34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지원 등) 34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36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37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37	
제5장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제2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38		
제25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9	제21조(농수산생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39	
제6장 보 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0	제22조(권한의 위임) 40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43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3		
제29조(국고보조 등) 43		
제30조(청문) 44		
제7장 벌 칙		
제31조(벌칙) 45		
제32조(양벌규정) 46		
제33조(과태료) 4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6	
부 칙		
제1조(시행일) 47	제1조(시행일) 47	제1조(시행일) 47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47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47	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47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제3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4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5조(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48 제6조(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7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49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49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5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48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8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4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p> <p>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p> <p>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2. "농수산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p> <p>가.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p> <p>나. "수산물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 또는 유전자원을 말한다.</p> <p>3. "농수산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p> <p>가.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p> <p>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다양성</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p> <p>5. "농수산유전자원"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수산종묘(水産種苗)·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p> <p>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p> <p>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p> <p>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p> <p>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p> <p>6. "현지내보존"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p> <p>7. "현지외보존"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p> <p>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 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9.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p> <p>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p> <p>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의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p>	<p>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수산생명자원</p> <p>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수산생명자원</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조(농수산생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수산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산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선박·도구 등을 갖추어 미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면허·동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수산물자원의 취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수산물자원에 대한 취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p>		<p>제2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형태적·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포함한 조사계획서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거나 제2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사항, 허가증교부, 허가사항 표시방법 및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동취득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p>	<p>제3조(수산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허가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자원 취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에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조직이 아닌 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그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산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자원 취득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준용한다.</p> <p>제10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취득한 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관할수역 내에서 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p> <p>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p> <p>④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수산생물자원을</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지역(해역) 2. 조사 기간 3. 조사 도구 4. 포획·채취물의 종류 <p>제4조(공동취득의 허가 절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 제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취득 자료의 배분 및 취득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합의를 첨부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취득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 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p> <p>제11조(허가등의 취소·중지)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 을 받은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취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 우 3. 중지기간 중에 취득을 한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 나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 을 이유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중지 를 요청하는 경우 5. 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 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8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p>제5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수산생물자원의 취득 을 마친 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착륙 또는 입항한 후 30일 이내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된 외 국인등은 허가등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 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우를 포함한다)</p> <p>7.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의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취득의 허가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취득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조건부 허가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p>		<p>제5조(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6조(허가의 조건)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p> <p>제14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p>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구(漁具)를 바다에 설치한 경우에는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일 것 2. 취득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자원 외의 수산생물자원은 방류할 것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15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효</p>	<p>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유효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p>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p>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p> <p>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p>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 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p>	<p>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증식·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제9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수산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⑥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p> <p>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p> <p>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p> <p>3. 관리기관의 농수산생명자원 보존 현황</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p>	<p>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 <p>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p> <p>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p> <p>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자원의 분양승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수산생명자원이 「중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p>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농수산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국내 농수산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물생명자원 	<p>지장이 없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당 농수산물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수산물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 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p> <p>제20조(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어가에서 재배·사육 또는 양식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p>		<p>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수산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p> <p>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수산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p> <p>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p> <p>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p> <p>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22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p>	<p>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의 과명(科名)·학명·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p>	<p>1.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p> <p>2.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등록·보존·평가 및 분야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 <p>3.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방법</p> <p>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기술</p> <p>3.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 분석·평가기술</p> <p>4.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p> <p>제18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p> <p>2.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p> <p>3.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간·보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p> <p>제2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p>	<p>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 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p> <p>2. 소요경비 산출명세</p> <p>3. 앞으로의 활용계획</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한 기본계획의 수립</p> <p>2. 농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p> <p>3.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p> <p>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p> <p>제25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p> <p>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p> <p>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p>	<p>2. 국립·공립 연구기관</p> <p>3. 관리기관</p> <p>4.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p> <p>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p> <p>2. 농수산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p> <p>3. 농수산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p> <p>4. 농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p> <p>5. 농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p>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1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p>	<p>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장이 된다.</p> <p>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6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협의·지정 및 고시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p>제3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권한 2. 법 제8조에 따른 취득 허가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취득의 허가 4.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중지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31조(벌칙)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p> <p>②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 자료 및 시료, 유전물질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은 제 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제 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 298호, '12.7.24 전부개정)
<p>분양승인된 사항으로 본다.</p> <p>제6조(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으로 본다.</p> <p>제7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p>	<p>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p>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위의 횡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법 른(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 받은 농업유전자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p>

법 률(제 10938호, '11.7.25 전부개정)	시행령(제 23983호, '12.7.24 전부개정)	시행규칙(제298호, '12.7.24 전부개정)
		· 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 동·식물”로 본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시행령 별표) [별표 1]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 팩스·텔레텍스 번호

나. 조사기관

-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 팩스·텔레텍스 번호
- 5) 기관에 대한 설명

다. 조사책임자

- 1) 성명 2) 소속 3) 직위·직책 4) 주소 5) 전화번호, 팩스·텔레텍스 번호
- 6) 국적 7) 출생지 8) 생년월일 9) 여권번호

라. 후원기관

-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후원내용

마. 제3국 참여에 관한 사항

- 1) 국명 2) 참여 목적 3) 참여 내용

바. 조사계획 수립 시 참여한 대한민국 과학자

-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 팩스 번호

사. 대한민국 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

- 1)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

가. 조사 명칭

나. 조사 목적

다. 조사의 성격

라. 조사 항목

마. 조사 기간

바. 조사 결과의 관리계획 및 활용계획

사. 기존 조사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아. 기존 조사자료 현황

자. 취득할 수산생물자원의 양

3. 조사방법, 조사인력 및 조사수단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 1) 명칭 2) 국적 3) 소유자 4) 운영자 5) 총톤수 6) 순톤수
- 7) 추진방식 8) 순항속도 9) 최대속도 10) 전체 길이 11) 최대 흘수(吃水) 12) 호출부호 13) 국제무선 주파수 14) 전화번호 15) 팩스 번호

나. 선장 및 승무원

- 1) 성명 2) 국적 3) 출생지 4) 생년월일 5) 직책 6) 선원수첩번호

다. 승선 과학자 및 동승자

- 1) 성명 2) 국적 3) 출생지 4) 생년월일 5) 소속 및 직위·직책
- 6) 조사선에서의 임무 7) 여권번호

라. 선박 장착 조사장비

- 1) 명칭 2) 장착 위치 3) 용도 4) 사용방법

마. 선박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책임한도

바. 항공기·잠수정 및 소형 선박

- 1) 명칭 2) 탑승(승선) 인원 3) 순항속도 4) 최대속도 5) 항속거리
- 6) 잠항 수심

사. 조사 항목 및 사용 장비

조사항목	사용장비(기기·설비포함)	사용방법

아. 유해물질 사용

- 1) 종류 2) 화학성분 3) 부피 및 무게 4) 사용 목적 및 장소

4. 설비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가. 설비

- 1) 명칭 2) 설치 위치 및 수심 3) 설치일 4) 가동일 5) 철거일
- 6) 사용방법

나. 장비

- 1) 명칭 2) 설치 위치 및 수심 3) 설치일 4) 가동일 5) 사용방법

5.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 가. 조사해역의 지리적 좌표 및 도면
- 나. 정선(停船)·정점(定點)의 지리적 좌표, 항적도(航跡圖) 및 조사 일정
- 다. 정선·정점별 조사방법
- 라. 항해 안전을 위한 조치
- 마. 수산·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6. 항해에 관한 사항

- 가. 조사해역 진입 직전의 기항지(寄港地) 및 출항일시
- 나. 조사해역 철수 후 최초 기항지 및 입항일시
- 다. 대한민국 내 기항지 및 입항·출항일시
- 라. 관할해역 최초 진입 예정일시 및 최종 퇴거 예정일시

7. 조사 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예비보고서 제출 예정일
- 나.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일
- 다. 기초자료 제공 예정일 및 제공방법
- 라. 시료(試料)
 - 1) 제공 예정일 2) 제공방법 3) 이용방법 4) 평가·해석 지원방법
- 마. 연구 결과의 국제적 활용 방안

8.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사항

- 가. 승선 인원
- 나. 승선·하선 장소 및 일시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제9조 관련)

1. 지정기준

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구분		보존 현황	관리 인력	시설 현황
식 물	종자	종자자원 300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500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영양체	영양체 자원 100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할 것 1) 영양체 보존포 500m ² 이상 2) 온실 33m ² 이상 3) 기내(器內) 조직배양실
가 축	생체	1) 부모 이상의 혈통 관계가 분명한 가축유전 자원 2) 관리대상 품종 또는 계통을 다음의 최소 집단 크기 이상 보유 가) 포유류 25마리 나) 가금류 50마리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축사 및 부대시설 보유
	동결보존	1) 부모 이상의 혈통 관계가 분명한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가축에서 생산된 정액, 난자, 수정란 등 2) 10개체 1,000스트로 이상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스트로 이상을 액체질소 내에 동결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곤 충	유용곤충	유용곤충 10종 이상 계대보전(繼代保全)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누에	누에 50계통 이상 보존		
미 생 물		미생물자원 50종 이상 및 300균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점 이상의 미생물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트로”란 정액·수정란을 담은 막대 유리관을 말한다. 2. “계대보전”이란 실내에서 계속적으로 세대를 반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 바이러스를 말한다. 4. 가축생체 중 멸종위험품종의 동일 집단을 2개 이상의 기관이 보존·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구분	보존 현황	관리 인력	시설 현황	
식 물	종자	종자자원 500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500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보유
	영양체 (생체 포함)	영양체(생체 포함)자원 100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할 것 1) 영양체(생체 포함) 보존포 300m ² 이상 2) 온실 33m ² 이상 3) 기내 조직배양실
	표본	표본자원 1,000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점 이상의 표본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보유
곤 충	유용 곤충	유용곤충 10종 이상 계대보전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표본	한국산 표본자원 10,000점 이상 보유		10,000점 이상의 표본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미 생 물	미생물자원 50종 이상 및 300균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점 이상의 미생물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시설 보유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대보전”이란 실내에서 계속적으로 세대를 반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생물”이란 버섯균주, 세균, 진균(真菌), 바이러스를 말한다. 				

다.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 관리기관

구분	보존 현황	관리인력	시설 현황
병원성 바이러스	20종 이상 및 100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생물안전관리등급(BL) 2급 이상 2) 면적 200m ²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병원성 세균	50종 이상 및 500균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생물안전관리등급(BL) 2급 이상 2) 면적 200m ²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병원성기생충 및 진균류	20종 이상 및 50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생물안전관리등급(BL) 2급 이상 2) 면적 200m ²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라. 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분야	보존 현황	관리인력	시설 현황
수산생물	수산동물유전자원 (어류, 패류, 갑각류, 포유류, 동물성 플랑크톤 등) 500종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보유 2) 1,000종 이상의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실 및 장비 보유
	수산식물유전자원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등) 70종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보유 2) 100종 이상의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실 및 장비 보유
수산미생물	병원성 바이러스, 세균 등 60종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 100종 이상의 병원성 미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2) 병원성 미생물자원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생물	미생물자원 200종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500종 이상의 미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2. 갱신기준

가. 관리기관 운영기간 중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을 것

나. 제1호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보존 현황, 관리인력, 시설 현황)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및 시료, 유전물질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수산물명자원을 분양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등급	기준
1. 1등급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 2등급	가.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나.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3. 3등급	가.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나.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 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별표 2]

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취득 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호의 개별기준의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1년에 2회 이상 취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다. 중지기간 중에 취득을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수행이나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필요한 기간 만큼의 취득 중지 (12개월 이내)
마. 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취득 중지 12개월
바. 법 제8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취득 중지 12개월
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취득 중지 6개월
아. 그 밖에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 중지 3개월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

나. 인력

- 1) 연구 인력을 3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출 것
- 2) 연구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생명자원 연구개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는 사람

2. 시설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농림수산식품분야 분석업무 수행기관으로서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이러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수산생명자원 분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분석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조사사업 명칭:						
	조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조사책임자 주소: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사 유형:	[] 단독조사		[] 공동조사			
공동 조사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조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한글 및 영어 조사계획서 각 20부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취득 자료의 배분 및 취득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합의서 1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제 호

수산생명자원 취득허가증

1. 기관명: (공동조사기관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5. 선박 종류: (선박 명칭)
6. 선박 번호:
7. 선박 규격
 - 가. 총톤수(톤): 나. 출력(마력):
 - 다. 선박 재질: 라. 길이(m):
 - 마. 깊이(m): 바. 너비(m):
8. 조사 지역(해역):
9. 조사 기간:
10. 조사 도구:
11. 포획·채취물의 종류:
12. 발급 부서명: (전화번호)
13. 제한 및 조건(별지 가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조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 · 산림청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제 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 개요	목적:	(별지 가능)		
	내용:	(별지 가능)		
	수행기관:			
	총분양 개체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 · 산림청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An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rm No. 7)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pplication No.	Submission Date	Date of Issuance/ Reading	Proceedings
			14 day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Distribution Overview	Objective		
	Contents of Distribution		
	Institution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Distributed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7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Date :

Applicant : (name) (Signature or Seal)

Attachment: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Distributed	No charge is imposed
---	----------------------

Proceedings



Applicant

Authoriti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Animal·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국내 국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분양량

분양승인 조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An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rm No. 9)

NO. : Domestic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Oversea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Resources Approved to be Distributed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Scientific Name)	Name of Resources	Distribution Quantity

Terms of Distribution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7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to be distributed.

year month da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Animal·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Republic of Korea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국외반출 개요	목적:			
	내용:			

총 반출 개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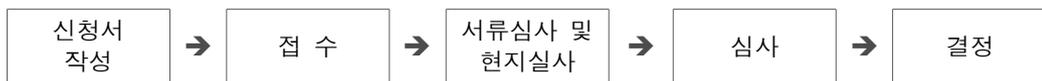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수산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An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rm No. 11)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lication No.	Submission Date	Date of Issuance/Reading	Proceedings 14day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Overseas Transfer Overview	Objective		
	Contents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Transferred

Under the Article 18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9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Date :

Applicant : (Last, First, Middle name) (Signature or Seal)

Attachment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Transferred Overseas	No charge is imposed
------------	--	----------------------

처리절차



Applicant

Authoriti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Animal·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농수산생명자원

- 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 내용(별지 가능)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반출량	비고

국외반출 승인조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조건부 국외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An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Form No. 13)

NO.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Resources Approved for Overseas Transfer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 (Scientific Name)	Name of Resources	Overseas Transfer Quantity	Note

Terms of Overseas Transfer

Under the Article 18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9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for overseas transfer.

year month da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Animal·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20g/㎡]

찾아보기(가나다순)

주요 내용	페이지	주요 내용	페이지
경과조치	47	국외반출 신청서	30, 72
공동취득허가	12	국외반출 신청절차	29
과태료	46	국제협력촉진	35
과태료 부과기준	46, 58	국제협력사업 경비지원	35
관리기관 갱신기준	21, 55	권한위임	40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23, 67	기본계획	7
관리기관 업무	21	농수산물다양성	3
관리기관 지정	21	농수산물생명자원	1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23, 67	농수산물생명자원목록	9
관리기관 지정기준	21, 55	농수산물생명자원보존목록	9
관리기관 지정서	21, 66	농수산물자원	2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21, 65	농수산물유전자원	3
관리기관 지정취소	25	농업생물자원	2
관할수역	5	다양성증대	32
국가의 책무	6	도입종	5
국고보조	43	등급기준	10
국민등	12	등급부여	10
국외반출 승인	29	별칙	45
국외반출 승인기준	29	부칙	47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	31	분석평가	10
국외반출 승인서	74	분양승인 기준	27
국외반출 승인취소	31	분양승인서	30, 74

주요 내용	페이지	주요 내용	페이지
분양승인 신청	26	이용촉진	32
분양승인 제한	26	인력육성	33
분양승인 취소	28	채래종	4
분양신청서	26, 68	정보화사업	33
수산생물자원	2	조건부허가	16
수산생물자원취득허가신청서	11, 63	조사계획서	12, 52
수산생물자원취득허가증	11, 64	조사등재	8
수산자원관리법	2	지속가능한 이용	5
시행계획	8	책임기관	19
심의위원회	38	책임기관업무	19
야생종	4	책임기관운영	19
양벌규정	46	청문	44
연구개발	34	통계간행물발간	37
외국인	11	해외자원개발시행기관지정	36
외국인등	11	해외자원개발시행기관지정기준	36, 61
외국인등의 권리의무	13	행정처분 기준	15, 60
외국인등의 취득	11	허가 조건	16
외국인등의 취득허가	11	허가 중지	15
위험에 대한 대응	18	허가 취소	15
유전물질	3	현지내보존	5
육성종	4	현지외보존	5